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한덕수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건강보험 분쟁 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증원한 한시정원 5명(6급 2명, 7급 2명, 8급 1명)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0. 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5항을 삭제한다.

별표 7 제5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5조(한시정원) ①·② 삭제 ③ (생략) ④ 삭제 ⑤ <u>건강보험 분쟁 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7월 6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둔다.</u> ⑥ ~ ⑧ (생략)	제45조(한시정원) ③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⑥ ~ ⑧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370